



제422회 국회(임시회)
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장애인학대 및 성범죄에 대해 의심할만한 상당한
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신고 확대〉

■ 양문석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7045호)

2025. 2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전문위원 오 세 일

목 차

I . 개요	1
--------------	---

II . 검토의견	2
-----------------	---

I. 개요

1. 양문석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7045호)

가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양문석의원 등 10인
- (2) 제 안 일 : 2024. 12. 27.
- (3) 회 부 일 : 2024. 12. 30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,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은 그 직무상 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.

그런데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).

II. 검토의견

1. 개정안의 내용

- 개정안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‘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’가 있는 경우까지 신고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4).

현행	개정안
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(이하 “장애인권익옹호기관”이라 한다)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	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- ----- ----- <u>알게 된 경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알게 된 경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</u>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
1. ~ 22. (생략) ③ ~ ⑧ (생략)	1. ~ 22. (현행과 같음) 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2. 검토의견

- 현행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르면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(이하 ‘장애인학대등’이라 함)를 알게 된 사람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,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, 그 종사자 등 일정 범위 직무 관련자들은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.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(이하 “장애인권익옹호기관”이라 한다)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(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을 포함한다)

2.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
3.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

4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의2의 의료기사

5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의 응급구조사

6.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
7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,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8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
9. 「유아교육법」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
10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
11.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·강사·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·직원
12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,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3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
14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15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6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7. 「아동복지법」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「아동복지법」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18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19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
20.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·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21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
22.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
□ 이상 장애인학대등에 대한 신고인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고, 「장애인복지법」¹⁾,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²⁾과 「특정법

1)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5(불이익조치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게 장애인학대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
2.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인사조치

죄신고자 등 보호법」에 따라 보호³⁾를 받는 한편, 신고의무자의 경우 장애인학대등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,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.⁴⁾

□ 개정안은 장애인학대등을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신고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, 이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장애인학대등을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받아 조사하고 있는바, 이 같은 현장 실무 상황을 법률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.

-
3. 전보, 전근,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인사조치
 4.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을 통한 임금, 상여금 등의 차별적 지급
 5. 교육·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박탈 및 예산·인력 등에 대한 업무상 제한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근무 조건의 차별적 조치
 6. 요주의 대상자 명단의 작성·공개, 집단 따돌림 및 폭행·폭언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적·신체적 위해 행위
 7.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,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

제86조의2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59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
2. 제5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방해하거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
- ② 제59조의5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이 되는 행위

2) 「**공익신고자 보호법**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공익침해행위”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가.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

나.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
[별표] 355. 「장애인복지법」

3) 「**장애인복지법**」 제59조의6(장애인학대범죄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)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에 대하여는 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4) 「**장애인복지법**」 제90조(과태료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3의4.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「병역법」 제2조 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.

01 장애인학대 인지와 대응



자료: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, 「신고의무자 교육자료」, <https://www.naapd.or.kr/data/edu>

□ 참고로, 「장애인복지법」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서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의심이 있는 경우까지를 신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, 「노인복지법」의 경우는 사법경찰관리는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.

또한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「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」(김예지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5771호)의 경우에도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를 신고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.

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(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

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·도, 시·군·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제39조의15(노인학대 등의 통보) ① 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,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5(노인학대 등의 통보) ① 사법경찰관리는 노인 사망 및 상해사건,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「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」 제14조(장애인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□ 한편, 개정안에 따라 신고 범위를 확대한다면, ① 이에 상응하여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에도 ‘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’를 포함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,

② 과태료 부과 대상인 신고의무자에게는 불이익한 입법 조치에 해당하므로,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 시행일을 조정하여 적절한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.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90조(과태료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3의4.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. 다만,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「병역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.

3.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

가. 보건복지부

- 개정안에서의 ‘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’와 유사한 입법례상 ‘그 의심이 있는 경우’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임.
- 다만, “의심”에 대한 기준의 모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“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(「성폭력처벌법」)”로 수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.

나.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

- 개정안에 찬성하지만, 악의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므로 의심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.

다.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

- “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”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신고가 남용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가 필요함.

문 의 처
02)6788-5502